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5. 11. 19(목)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15. 11. 20(금)

다. 상정일자 : 2015. 12. 7(월) 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자치행정과장 장동기)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강화, 사회복지직 기준정원 승인에 따른 인력증원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보면
정원의 총수를 당초 629명에서 4명이 증가한 633명으로 변경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17명을 621명으로 일반직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3명은 본청으로, 1명은 직속기관으로 정원을 조정 하고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강원도 승인사항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호외의 부분 중 “629명”을 “633명”으로 하고 제1호중 “617명”을 “62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정원 중 5급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33	633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11	611				
4급	2	1		1		
4~5급	2	2				
5급	25	10	2	4	1	8
6급 이하	581	581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2	2				
연구관						
연구사	2	2				
지도직 계	19	19				
지도관	1			1		
지도사	18	18				